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FAQ

I 장려금 신청 자격

1. 장려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2023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② (학력 요건) 직업계고¹⁾ 3학년 및 일반고²⁾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 ③ (취업 요건) 중소기업³⁾·중견기업⁴⁾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1)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제9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및 동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직업반)
- 2) 일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직업계고를 제외한 학교
-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2. 신청화면에 있는 일반계고 위탁과정(180일 이상)이 무엇인가요?

A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여 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180일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당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종사 중이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취업예정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4.11.30.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 여부가 확인되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재직) 보고한 신청자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 단, 기한 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이 확인되어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4.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A

☞ 중복참여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장려금>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

사업명	부처	비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은 장려금 수혜 후 의무종사 종료 시 가입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장애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복참여 금지 기간: 장려금 지원 사업기준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 종료일까지
(단, 환수대상자는 환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타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5. 장려금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였으나 최근 퇴사를 하였습니다. 추후 재단에서 심사승인이 될 경우 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 사업기준일('23.10.1.)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이력이 있을 경우, 현재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후 졸업 당해연도에 대학을 진학(입학)한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어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진학(입학) 전 의무종사는 인정되며,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진학(입학)은 예외로 인정하여 환수하지 않음

※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과정을 통해 근로자 자격으로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학 진학으로 보지 않음

6.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2).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지원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2번)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제외)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3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재단과 협약한 신용정보회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판단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또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업종 제한의 요건을 두고 있으나, 부동산업의 경우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이용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업종 제한의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이용업의 경우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0.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부모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신청 전 부모기업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발견 시 전액 반환처리)

11.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9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대상기업에 해당

12.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위탁과정(180일 이상)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4.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소득이 낮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현재 규모가 작은 외국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기업 재직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6. 2023학년도 장려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 전 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 반드시 가입해야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은 이행(신용)보험에 가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이행(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7. 이행보증(신용)보험 가입자로 선정 시 보험 가입은 수혜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3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이행보증(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며, 보증(신용)보험료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납부합니다. 다만, 수혜자께서는 보험 일괄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안내가 오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이유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18. 부사관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해진 기간(~'24.11.30.) 내 지원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재직 확인이 되는 경우(고용보험 가입정보) 장려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19. 사립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공공기관, 외국법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기업규모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주점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업의 업종이 제외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3학년도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5자리)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연계하여 심사
 - 적용 범위 및 기준은 국세청 '기준(단순) 경비율' 자료를 참고

【 중소기업인력법 제3조에 따른 의무종사 이행 제외 업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국세청 업종분류 (6자리)	
세분류 및 세세분류	코드	코드	세부 설명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1	고급주점(독립된 객실)
		552202	빠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552203	클럽, 나이트클럽 등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4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생맥주 전문점	56213	552205	생맥주집(호프집)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6	기타 유흥 주점
		552207	단란주점
		552208	기타 서양식 주점
		552209	대폿집, 선술집(토속주점)
		552210	소주방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11	홀덤펍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1	512293	복권(도매)
		522082	복권(소매)
		924906	복권 발행
무도장 운영업	91291	921904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등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24903	노래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24917	도박시설 및 경마 등 배팅 시설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1	924904	전화방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950001	요리사, 가정부, 보모, 운전사, 가정교사 등

II 장려금 신청 방법

1.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은행발급 인증서(※발급 전 은행으로 절차 확인)를 발급 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장려금 신청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로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하기”(메뉴 경로 및 명칭 변경 가능)

경로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로그인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2. 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A

☞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은 제외하고 학교 담당자 서명만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학교 담당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학적(학교, 학년 등),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학교추천 절차가 없어지면서 학적정보 확인 등을 학교 담당자 서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 담당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명이 없을 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담당자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취업(재직)보고의 경우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 2023학년도부터 장려금 신청자의 취업(재직)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정보만 활용하여 심사합니다. 고용정보 외 신청자가 직접 취업보고를 위한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폐지되었으며, 반드시 '24.11.3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재단에 전달되어야 심사 가능합니다.

6. 장려금 신청 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 네,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중 하나로 장려금 신청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전교육: 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 진행(의무종사, 장려금 환수 및 중소기업 이해 등 교육)

7.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증빙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A

☞ 증빙서류는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의 붙임 양식(붙임7 참고)을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위탁기관의 기관장 서명(혹은 날인)을 받은 후, 장려금 신청 시 업로드

Ⅲ 장려금 지급

1. 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아래의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① '22학년도 신청자('23년 졸업) 우선 지급
- ② 사업기준일 이후 고용보험 전산정보 입사 확인일이 빠른 신청자(사업기준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사업기준일을 입사일로 봄),
- ③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이수자,
- ④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⑤ 전공연계 취업자
- ⑥ 직업계고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2. 장려금 신청 당시 등록한 지급 희망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 네,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현황에서 신청서 수정을 통해 등록한 지급 희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신청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로 변경 요청 바랍니다.

※ 본인 계좌가 아닐 시 지급 불가

IV 의무종사

1. 재단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자입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 기간은 장려금 의무종사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A

☞ 네,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인정기간 산정 시,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기간은 제외됩니다.

2. 의무종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 장려금 수혜자는 사업 기준일('23.10.1.)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에서 360일(12개월) 간 의무종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기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기준일 이전 취업자: 사업기준일('23.10.1.)부터 의무종사 시작
-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자: 고용보험 DB상 고용보험 취득일(근무 개시일)로부터 의무종사 시작

※ 단, 사업 기준일 이전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한 날로부터 의무종사가 인정됨

3.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완료 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네,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이행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의무종사 이행 심사가 완료된 수혜자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수혜자의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사실을 증명하며, 이때 의무종사 종료일은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의무종사 이행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4. 최초 선발 시 재직하던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었으나, 의무종사 이행 도중 대기업 등으로 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의무종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네, 인정 가능합니다. 최초 선발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인되어 선발되었으나 기업규모가 변동되어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업에 대한 재직은 의무종사로 인정됩니다.

5. 취업연계 장려금을 수혜 후, 근무하던 기업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의무종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 ☞ 네,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1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도 사업 기준일('23.10.1.)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종사일수에 모두 합산됩니다. 또한, 합산한 일수가 의무종사 기간인 360일(12개월)이 되면 의무종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기업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국가근로 근무 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 ☞ 국가근로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채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30개월 이내에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원칙적으로 의무종사는 사업기준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지만 유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단으로 유예 신청하고 재단 승인 하에 최대 24개월까지 추가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추가 유예 신청 시 이행(신용)보험 가입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승인이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추가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유예 사유	추가 유예 가능 기간	증빙 서류
군(軍) 입대	최대 24개월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직업군인은 추가유예 불가
천 재 지 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 서류(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에서 증빙하는 서류)
임신·출산		▶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관련 병원 진단서 등 증빙 가능 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기간 + 2개월 (최대 24개월 이내)	▶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재단 심사 진행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추가유예 불가)

8. 의무종사 기간인 360일(12개월)을 근무하면 의무종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A

- ☞ 의무종사 기간인 360일(12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의무종사 이행 여부 심사가 완료되어야 수혜자의 의무가 최종 완료됩니다.
- 재단은 정기 심사 또는 상시 심사를 통해 재직여부, 기업규모, 의무종사 이행일수 등을 종합하여 의무종사 이행 완료여부를 심사합니다. 단, 의무종사 심사 후 이행 완료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의무종사 미충족 사유 및 환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종사 완료처리 취소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의무종사 확인서 발급 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확인서’는 의무종사 완료 처리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완료 이후에도 발급되지 않는다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센터☎: 1800-0499

10.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시 의무종사로 인정되나요?

A

- ☞ 불가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로 인한 근무는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복무 사유로 인한 의무종사 추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V 포기 및 반환

1. 장려금 수령 후 포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학진학, 대기업 재취업,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장려금 포기신청을 할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환수금은 실제 의무종사일수를 감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blacksquare \text{ 환수 금액} = (\text{장려금 전액}) \times (\text{잔여 의무종사기간}^* / \text{총 의무종사일(360일)})$$

* 잔여 의무종사기간 = 총 의무종사일수(1년) - 의무종사인정기간(일)

2. 포기신청을 했으나, 사유 해소 및 단순 변심 등으로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 ☞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혜자가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타 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이행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동종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휴학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 네, 장려금을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 휴학·자퇴·제적·퇴학 등 수학 중단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 수혜자 자격이 박탈되고 장려금이 전액 반환됩니다.

5. 장려금 반환 및 환수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장려금 수혜자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재단에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취업 포기, 타 일자리사업 참여 등 자발적으로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② 의무종사 기간 (1년, 36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부 반환)
- ③ 학교를 졸업 하지 못한 경우 ('23년 3학년 → '24년 초 졸업)
- ④ 중소·중견기업 불인정 및 지급 제한 기업에 취업이 확인된 경우
- ⑤ 졸업 당해연도에 대학을 진학(입학)한 경우
 - ※ 진학(입학) 전 의무종사는 인정되며,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진학(입학)은 예외로 인정하여 환수하지 않음
 - ※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과정을 통해 근로자 자격으로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학 진학으로 보지 않음
-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
- ⑦ 기타 반환 및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6. 환수대상자로 선정 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장려금 수혜자가 환수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재단은 장려금 수혜자에게 환수금,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통지하고, 이후 통지한 기한까지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용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